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기특법)

산업자원부 규제심의담당관실 서용일서기관

1. 기특법의 개요

- 제정 배경
 - 기업의 자율성과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행정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93.6.11)
 - 주요내용
 - 창업 및 공장설립, 의무고용, 수출입, 검사, 진입관련 등의 규제 완화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법률의 성격
 - 행정규제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의 규정으로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 또는 공동채용에 관한 규정

◆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관리인의 겸직허용 규정

<법 제29조 제4항>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시행령 제12조제7항>

⑦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 보건관리자의 공동채용 규정

<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 이어야 한다.

◆ 동일한 산업단지 등의 의미 규정

<법 제32조제1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 등)로 정의 하였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이 설치된 건물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집단화 지역

<시행규칙 제7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유도지역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역

3.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

- ◆ 산업단지 밖의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사업장간의 공동채용의 가능하도록 제도보완 필요성
 - 공동채용이 가능한 사업장과 사업장간의 거리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 그에 따라 기특법 또는 산안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 사업장의 수를 3이하, 근로자의 수를 300인 이하로 중복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사업장의 수 제한을 폐지할 필요성
 - 1인의 보건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량과 사업장간의 거리기준 등을 검토하여 노동부에서 개정을 요청할 경우 기특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